



고용노동부

고 용 노 동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1. 관련근거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분말형태의 이온음료'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건설업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6월부터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사용가능품목	비고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사용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장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비용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 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제2항 적용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 ,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3. 각 지방관서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모임 등을 활용하여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장(산재예방감독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왕유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동부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제주산재예방감독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시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시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시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시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

전문위원	류재은	시설사무관	백승현	건설산재예방 전결 2026. 6. 16. 감독과장	황효정
협조자					
시행	건설산재예방감독과-2194	(2026. 6. 16.)	접수	산재예방감독과-2150	(2026. 6. 16.)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8942	팩스번호	044-862-8075	/ csiilver55@korea.kr	/ 대한민국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